

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

우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번지 / 전화 (02) 3703-2068~71 / 전송 735-6251
보호지도과 과장 정현율 담당사무관 김석병 담당자 서정현

문서번호 기준 82590-

시행일자 1999. 6. 28. ()

받음 받는곳 참조

취급		국무총리
보존		
위원장		
사무국장		
●과장		
★기안	김석병	협조

제목 : 개정 청소년보호법 특별계도 및 단속대책 지시 (국무총리 지시99-14호)

오는 7. 1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대폭 강화되어 유홍주점, 단란주점 등 유홍 향락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각종 성적접대, 유홍접객, 호객 등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들 행위 등은 일부 국민들의 오랜 관습과 타성으로 인해 일거에 법집행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7. 1부터 8. 31까지 2개월간 「특별계도기간」을 설정, 집중 홍보하는 한편, 9. 1.부터는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홍향락업소에서의 각종 퇴폐향락 등 불법 변태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특별계도 및 단속대책을 불임과 같이 지시하니 각 소관 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계도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개정 청소년보호법 특별계도 및 단속대책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받는곳 : 가(36, 37, 41, 43, 45, 52, 56, 58)

개정 청소년보호법 특별계도 및 단속 대책

1. 목 적

-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으나, 유흥향락산업의 번창, 심야영업제한의 해제 등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대폭 강화
- '99. 7. 1.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유홍주점·단란주점 등 유홍향락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각종 성적 접대, 유홍접객, 호객 등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등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들 행위 등을 오랜 관습과 타성으로 인해 일거에 법집행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
- 이에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
 - '99. 7. 1.부터 2개월간 범정부적으로 「특별계도 병행기간」을 설정하여 일반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집중 홍보기회를 확충하고
 - 그후 집중적인 일제 특별단속을 통해 유홍향락업소에서의 각종 퇴폐향락 등 불법 변태영업을 근절하기 위함
- ※ '98. 6. 28.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유흥업소 관련 미성년자보호대책과 관련임.

2. 유흥업소의 불법·변태영업 실태

- 유흥업소에서 10대 청소년을 고용하는 속칭 “영계산업” 만연
 - 미성년자(소위 “영계”) 선호 고객들의 기호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10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례 일반화
- 불법 접대부 고용 단란주점·노래방 등 확산
 - 주류판매, 접대부 고용·알선 등 성행, 단란주점·노래방 등 사실상 유흥·주점화, 업종간 경쟁심화로 인한 퇴폐·향락업소 확산

○ 속칭 “티켓”다방

- 청소년들의 고용이 자유로운 다방인 점을 악용, 차배달외에 일정 시간동안 손님과 매춘 또는 접대행위 성행

○ 10대 남자 고용업소

- “호스트바”, “남봉다방” 등 여자손님을 위한 남자 청소년 고용 사례도 증가

○ 비디오방

- 남녀의 성적 접촉 장소화 및 숙박업소화 경향

3. 유통업소 청소년보호법 주요 개정내용

가. 청소년보호연령 19세미만으로 통일

1) 술·담배판매 금지연령 19세미만자로 조정

- 종전은 미성년자보호법, 식품위생법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0세미만자에게 술·담배를 판매할 수 없었으나
-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술·담배 판매금지연령이 19세미만자로 조정됨.

2) 유통업소 출입·고용금지연령, 19세미만자로 조정

<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>

- 유통주점업, 단란주점업, 무도장업, 무도학원업, 사행행위영업 등
→ 고용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→ 출입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

<청소년출입은 가능하되,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>

- 종전 : 숙박업, 이용업(허용남자 제외), 목욕장업(안마실, 개실이 있는 경우)
- 추가 : 티켓다방, 소주방·호프·까페 등 주로 주류판매 목적형태의 영업
→ 위반시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
* 청소년유해업소 정의 명확화

- 법령에 의한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 등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기준
- 무허가 업소가 모두 포함됨을 명시함

3) “19세미만 출입·고용금지업소” 표시제 도입

- 대상 :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 업소
- 방법 : 출입구의 가장 잘보이는 곳에 「19세미만 출입·고용금지업소」라는 표시를 한면이 400mm, 다른 한면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부착
→ 위반시 : 2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

나. 청소년 이용 퇴폐행위 등 금지

1) 청소년의 성적탈선 조장행위 금지

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

-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하여 애무, 안마, 성행위, 유사성행위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‘홀딱쇼’ 등 음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
- 안마시술소, 퇴폐이발소, 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, 목욕보조, 알몸접대 및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
- 속칭 ‘호스트바’에서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접대를 시키는 행위
- 여관, 모텔,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 알선 및 일부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
- 윤락업소에서의 19세미만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 등
→ 위반시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

청소년으로 하여금 술, 춤, 노래 등으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

-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 변태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
 - 속칭 ‘호스트바’에서 19세미만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
 - 모든 보도방·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의 19세미만 청소년 접대부 소개 행위 등
- 위반시 10년이하 징역

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

-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, 성 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
- 위반시 10년이하 징역

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

- 주로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(속칭 “빼끼행위”)를 시키는 경우
 - 노래방·비디오방 등 기존에는 호객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
- 위반시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
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

- 여관, 모텔, 호텔 등 숙박업소, 비디오방, 만화방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등
→ 위반시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
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

- 19세미만 청소년과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속칭 일본식 ‘원조교제’나 19세미만 청소년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등
 - 성교행위 뿐 아니라 입,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포함
→ 위반시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
2) 청소년에 대한 가혹행위 금지

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

- 19세미만 장애아 공연, 19세미만 기형아 이용 구결행위 등
→ 위반시 5년이하 징역

청소년에게 구결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결하는 행위

- 속칭 ‘앵벌이’등 19세미만 청소년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구결행위 등
→ 위반시 5년이하 징역

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

- 옷을 안 입히거나 굽기거나 잠을 안재우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, 정도를 넘어선 징계행위,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생명·신체의 완전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·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대우 등
→ 위반시 5년이하 징역

다. 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청소년통행제한구역제도 도입

○ 종 류
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: 윤락가 등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
- 청소년통행제한구역 :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

※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'99. 7. 1.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모두 전환, 관련주체가 경찰에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

○ 방 안

-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
- 지역주민 의견반영, 구역지정
- 경찰은 경찰상 필요한 조치 강구

※ 2개월 특별계도 기간동안,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초소 설치 등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, 경찰은 경찰상 필요 조치를 강구

4. 대 책

가. 특별계도 병행기간 설정 운영

- 1) 기 간 : '99. 7. 1.~8. 31. (2개월간)
- 2) 주 체 : 소관 기관별로 특별계도 병행방안 수립 시행

- 각종 홍보자료 제작·배포
- 각종 언론매체(지방지 등)를 통한 계도
- 업종단체의 자율적 계몽 및 정화운동 지원
- 시민단체, 유해환경감시단 등과의 연계추진

3) 소관부처별 중점 계도방안

- 행정자치부 : 자치단체별 자체계도 계획수립·추진
- 교육부 : 교사등에 대한 홍보
- 보건복지부 : 관련 단체별 자체계도 활동지원
- 노동부 : 무허가 보도방·직업안내소 등에 대한 계도
- 산업자원부 : 대기업, 중소기업 등 사기업체 대상 홍보
- 대검찰청 : 수사요원 자체교육 및 주민계도
- 경찰청 : 일선 경찰관서 자체교육 및 주민계도

라. 단속

- 신고, 적발 등에 의한 일상적인 단속은 평상시와 같이 수행하되,
- 특별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

나. 소관부처별 일제 특별단속 실시

가. 기간 : '99. 9. 1.~9. 30. (1개월간)

나. 주체 : 소관 기관별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, 일제단속 실시

다. 중점 단속대상 : 개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

라. 단속·처벌강화 방안

○ 교차·반복단속 철저 실시

- 시·군·구 또는 경찰서간 교차단속 실시로 업소와의 유착의혹 제거
- 유흥업소 등 유해행위 다발지역을 주요감시지역으로 지정, 반복 단속 등 특별관리

○ 형사처벌 철저

- 고질적 사회악이므로 예외없이 형사입건
- 가급적 법정 최고형 구형

○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

- 단속기관은 적발 즉시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
- 행정처분기관은 자체없이 엄정한 행정처분 실시

○ 불법·변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실시

-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부당이득 환수
- 단속기관은 세무서에 통보

다.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 운영 철저

○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는 적극 협조, 운영철저

- 지방자치단체 : 안내표시(도로, 입간판 설치 등), 감시초소 설치 등
- 경찰 :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찰상 필요한 조치 (순찰, 선도활동 등)

5. 행정사항

○ 보고시기 및 방식은 추후 통보하는 계획에 의함.